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56호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 관내에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시“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이란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함(안 제2조)
-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생산자·소비자의 역할
(안 제4조, 제5조)

- 지역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지원농식품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안 제7조, 제8조)
- 지역농식품의 생산·가공사업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안 제9조, 제10조)
- 지역농식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지원하
고 공공부문에서의 지역농식품 우선 사용 (안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12. 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로컬푸드 : Local Food)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이하 “지역농식품”라 한다)이란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단, 가공식품에 사용된 지역농수산물의 최소기준은 품목별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 “지역농식품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이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내 농식품의 생산·소비·가공·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농식품”이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 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지역농식품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절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친환경적인 생산구조와 먹거리의 이동거리 최소화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조(생산자의 역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한 농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농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식품의 관내 생산·소비·가공·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식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농식품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농식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2. 생산자·소비자·가공업종사자·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식품의 학교급식 참여사업 등
4. 지역농식품 확산 캠페인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연결사업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유통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농식품 생산·가공사업 지원) ① 시장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방향에서 다수의 지역농민 참여 방식으로 다품종 기획생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지역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가 가공업을 계획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농식품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식품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와 전문직매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거래 장터 및 전문직매장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거래장터 및 전문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거래장터 및 전문직매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인증관리와 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지역농식품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및 각급 학교 등의 단체급식시 지역농식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제휴농식품 활성화 추진) ① 시장은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식품 분야의 국내외 협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4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한 사항

4. 작 성 자

- 기획행정위원회 홍 성 욱 의원